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
주민행정부

주체 99(2010)년 7 월 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944 호로 채택

주체 109(2020)년 7 월 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51 호로 수정

제 1 장 주민행정부의 기본

제 1 조 (주민행정부의 사명)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부 법은 주민행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주민행 정부는 인민들의 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보는 중요한 국가관리 사업이다.

주민행정사업에는 신분등록사업,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, 살림집 보장사업, 먹는물보

장사업, 교육교양사업, 노동행정사업, 상품공급사업,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속한다.

제 3 조 (주민행정사업의 기본원칙)

인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. 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.

제 4 조 (법의 적용대상)

이 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국민에게 적용한다.

공화국령역에서 살고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5 조 (다른 법과의 관계)

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.

제 2 장 주민행정기관

제 6 조 (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담당자)

도 (직할시) ,시 (구역) ,군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.

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사무소의 설치)

주민행정사업을 실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 (구역) ,군인민위원회 아래에 사무소를 내온다.

사무소는 리 (읍, 로동자구, 동) 에 둔다.

리 (읍, 로동자구, 동) 사무소의 책임자는 사무장이다.

제 8 조 (사무소의 지위)

리 (읍,로동자구,동) 사무소는 주민행정사업의 말단집행기관이다.

사무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 (구역) ,군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.

리 (읍, 로동자구, 동) 사무소는 공인과 명판을 가진다.

제 9 조 (인민반의 조직)

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.

인민위원회는 주민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여 인민반을 조직하여야 한다.

인민반의 세대수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.

제 10 조 (인민반장)

인민반에는 반장, 부반장을 둔다.

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한다.

인민반장은 해당 리 (읍, 로동자구, 동) 사무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.

제 3 장 주민행정관리

제 11 조 (주민행정관리계획의 작성과 집행)

주민행정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.

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관리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신분등록)

주민은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분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
2. 결혼 또는 리혼하였을 경우
3. 공민증 (평양시민증) 을 발급받으려 할 경우
4. 조선인민군, 사회안전군에 입대 또는 조선인민군, 사회안전군에서 제대될 경우
5. 공화국국적에 입적하였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
6. 거주 또는 퇴거하러 할 경우
7. 립양 또는 파양하러 할 경우
8. 다른 나라에 립시거주하러 할 경우
9. 신분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러 할 경우

제 13 조 (어린이보육교양조건보장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, 악기, 놀이감, 출판물,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.

거리와 마을에는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어린이들이 리용할 여러가지 유희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.

제 14 조 (교육조건의 보장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교육기관은 지역안의 주민수, 통학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소학교, 중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.

제 15 조 (주민들에 대한 공급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공급기준에 따라 식량과 부식물, 쌀, 감, 먹는물, 주민용상품 같은것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세대를 등록하고 세대별로 공급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편의봉사망의 운영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위생편의, 가공편의, 수리편의,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편의봉사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의료봉사망의 합리적배치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인민병원,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인 의료설비와 약품을 보장해주어 주민들이 제때에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살림집의 건설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주민들의 수요, 생활감정, 풍습에 맞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하부구조의 건설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망, 통신망, 상하수도망, 난방망, 우수망 같은것을 생활구역단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자연환경의 보장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거리와 마을에 수종이 좋은 가로수와 과일나무, 꽃나무, 록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관리담당구역제의 실시)

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기관, 기업소, 인민반들에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거리와 마을관리에서 모범적인 기관, 기업소, 인민반은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한다.

제 22 조 (공로자,년로자,가정부인들의 생활보장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공로자, 년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정부인들을

가
내편의봉사, 부업생산 같은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세대당 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저금사업)

인민위원회와 은행 기관은 리 (읍, 로동자구, 동) 에 저금소를 내고 주민들이 저금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금한 돈을 찾아쓸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(절 약운동,수매 사업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가정들에서 물과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사고방지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속에서 화재사고, 전기사고, 가스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.

나타난 사고요소들은 제때에 조사장악하여 퇴치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사회질서유지와 경비조직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과 주민지역안의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신소,청원의 접수처리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제때에 빠짐없이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정확히 료해처리 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주민공급과 생활보장정형의 장악,보고)

리 (읍,로동자구,동) 사무소는 관할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생활보장정형을 일, 주, 월별로 장악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.

제 29 조 (살림집의 리용)

살림집을 리용하려는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.

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살림집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없다.

제 30 조 (인민반,가정 생활)

주민은 인민반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거리와 마을, 살림 집관리)

주민은 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, 살림집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숙박질서)

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3 조 (신고질서)

주민은 위법행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

제 34 조 (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)

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.

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책임과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.

제 35 조 (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)

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인민위원회가 한다.

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36 조 (주민생활조건의 우선적보장)

국가계획기 관, 자재 공급기 관, 재정은행기 관, 전력 공급기 관, 해당 기관은 주민행정사업에 필요한 자재, 설비,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

주민행정사업에 돌려진 자재, 설비,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.

제 37 조 (시장운영질서,물질적부담금지)

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시장운영질서를 바로세우며 주민들에게 물질적부 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.

제 38 조 (주민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)

주민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.

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행정적 또는 형사적책 임)

이 법을 어겨 주민행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.